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의 견 서

-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 김재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56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날에 대한 관심과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항의 신설 취지에 공감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미래청년기획단장 김 철 희